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인력풀 공개모집 안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및 수행 업무

○ 지원 자격

- 가.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나.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다.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 라.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 마.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 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차장 또는 부장급 상당 이상인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위의 지원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민간기업에 종사 중인 자는 제외[단, 비영리 민간법인(사단·재단법인 등) 종사자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음]

○ 수행 업무

-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평가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아래 심사 분야 중 ‘가. 직무전문지식’과 ‘나. 직무전문소양’ 두 분야 모두에 대해 면접심사를 진행함
- 우수건설기술인 면접심사 시 활용할 ‘가. 직무전문지식’ 분야 문제출제(2문항)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비고														
면접심사	가. 직무 전문지식	구조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설계도서 등을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	26년 평가분야														
		시공	도면 및 시방서를 기반으로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시공순서, 자재 및 장비 활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안전 및 품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관련 규정, 관리 기준 및 첨단기술 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사업관리	고난이도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조직관리·문제 조정·의사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경험과 혁신성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수행하고,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나. 직무 전문소양	윤리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위기대응능력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재 수급 지연, 설계 변경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기술적·관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기술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며 협업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개방성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접근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 면접은 전문지식과 전문소양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5개 평가분야 중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함. 각 영역은 20점 배점 문항 2개와 10점 배점 문항 1개로 구성되며, 총 6문항에 대해 아래의 등급 기준에 따라 응답을 심사함. 면접심사위원의 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최종 득점을 산정함. * 개별 문항의 평가결과가 ‘미흡’인 경우, 문항 과락을 적용함. <table><tr><td>등급</td><td>부적격</td><td>매우미흡</td><td>미흡</td><td>보통</td><td>우수</td><td>매우우수</td></tr><tr><td>점수</td><td>0%</td><td>20%</td><td>40%</td><td>60%</td><td>80%</td><td>100%</td></tr></table>				등급	부적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0%	20%	40%	60%	80%	100%	
등급	부적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0%	20%	40%	60%	80%	100%												

2.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26. 7. 27.(월) ~ 2026. 8. 7.(금) 18:00까지
- 모집 분야 : ① 건축시설 및 ② 도로·교통시설(도로·공항) 분야
- 신청 방법

가. 자료제출 이메일 주소 : k3@kalis.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메일제목)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지원(00시설_홍길동)

* (제출파일)

① [붙임1]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 신청서(00시설_홍길동)^{엑셀파일}

②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00시설_홍길동)^{서명포함 스캔본}

④ [붙임3] 증빙서류(00시설_홍길동)

가. 재직증명서(해당 시)

나. 최종학위증명서(해당 시)

다. 자격증 사본(해당 시)

라. 경력증명서(경력 상세 기재)

나. 자료양식 : 첨부 서식을 이용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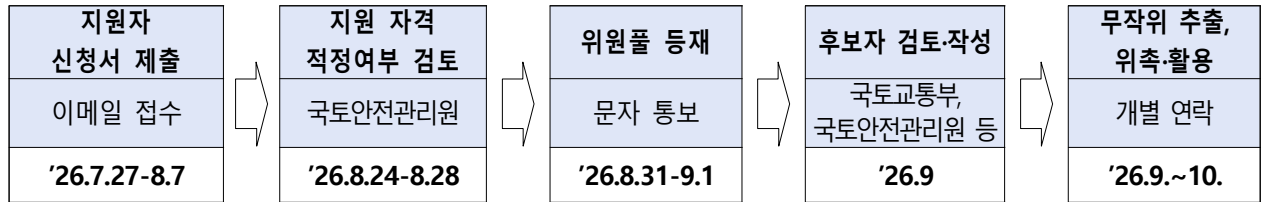
* 자료다운 : www.kalis.or.kr → 소식/참여 → 공지사항

[제목 :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모집 안내]

[지원 자격별 필수 증빙서류]

지원 자격	증빙서류 유형
가.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기술사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나.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명, 직급(정교수, 부교수 등)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
다.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최종학위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라.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자	최종학위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마.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등
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차장 또는 부장급 상당 이상인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해당 기관명+직급이 모두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 등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 기관명 기재된 재직(경력)증명서 등

3. 모집 및 위촉절차



○ 위원풀 관리

- 지원자격 적격자는 위원풀에 등재되며, 선정 분야[2026년: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도로·공항)]에 대해 구성인원의 2~3배수 이상 후보자를 사전 작성한 후, 무작위 순번에 따라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위촉 및 활용

○ 위원 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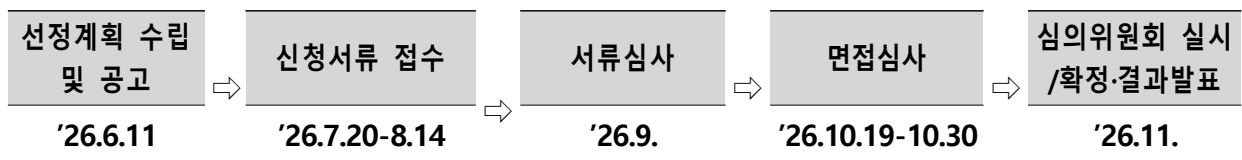
가. 위원풀 등재

- 위원풀에 등재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만료 후에는 재등록 심사 및 자격 검증을 거쳐 재등재 여부 결정

나. 위원 위촉

- 실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임기는 해당 면접평가 건 종료 시까지로 한정

4. '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절차



5. 유의사항

- 본 공개모집은 평가위원풀 등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은 아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착오 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기술내용 및 경력증빙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일 경우 평가위원풀 등록의 취소 및 향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기 위촉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평가 전 반드시 청렴교육 등 사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평가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위촉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공정성에 관한 서약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 평가위원 위촉의 해제 및 배제

[위촉해제 및 배제 사유]

사유	해제 및 배제 기간
질병·심신쇠약·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 배제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영구배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평가를 소홀히 하여 평가 결과가 번복된 경우	최대 3년 배제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타 위원에 평가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선정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그 밖에 임의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기타

-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 참여 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 및 문제 출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문의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건설안전평가실 055-771-1574, 1531

- 별첨
1.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끝.

2026. 7. 27.

국토안전관리원장